

한국 재보험시장의 자유화와 선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 현¹⁾, 민 성규²⁾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Shipowner coping with Liberalization of Korean Reinsurance Market

Hyun Kim, Sung-Kyu Min

Abstract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grown rapidly in its volume owing to the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Th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n many aspects as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insurance, especially over the non-life insurance,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supporting other industries and accordingly should be managed soundly. The insurance industry has enjoyed the benefit of protectionism which is the other side of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insurance industry.

With the economic growth, Korea could not cling to protectionism for the insurance industry and had to consider introducing the liberalization and the opening of domestic insurance market.

There have been some studies regarding the measures to cope with the changes of insurance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insurer or reinsurer but it appears to the writer that the study from the viewpoint of

1)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사과정 해상보험 전공

2)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교수

shipowner or operator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strategies which shipowner or operator may take in the changed insurance environment, giving priority to the liberalization and opening of hull reinsurance market.

The dominant causes of the liberalization and opening of Korean insurance market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1980'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trongly requested Korean government to open insurance market as well as other service markets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trade imbalance.

Secondly, according to the agreement to Uruguay Round, the insurance market except some items should be opened to all countries participating in UR on "Most Favored Nation" base.

Thirdly, Korea is going to join OECD for which the insurance market should be opened in various aspects as per OECD's rule.

The subject matters of the liberalization and opening of insurance market are as follows.

1. Cross-border of cargo insurance
2. Non-life insurance premium rates
3. Non-life insurance marketing system
4. Reinsurance

Among the above, shipowners would have substantial interests in the opening of hull reinsurance market which is scheduled for April 1, 1996. In addition, shipowners have to prepare to face the change of hull insurance environment.

In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strategies that the hull insured, shipowner may take in the changed insurance environment are as follows.

1. Shipowner have to anticipate the subsequent changes of the insurer or reinsurer and have to set up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m.
2. Shipowner have to give more consideration to the risk management in the vessel's operation because, in the changed insurance environment, the

insurance contract will be more affected by the shipowner's loss record.

3. Shipowner have to try to save cost with respect to the insurance premium taking advantage of the change of reinsurance system.

4. Shipowner have to be well informed of the world insurance market.

1. 서 론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보험산업 보호 및 육성에 힘입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보험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법적규제 및 호혜장치는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우루과이 라운드, 한국의 OECD가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점차 완화 및 폐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보험산업은 자율화 및 개방화된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하에서 보험산업 종사자들은 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라 격심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개방 및 자율화는 비단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거액의 재산을 선박보험에 확보하고 있는 해운회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체 손해보험시장 및 선박보험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선사의 보험부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보험시장의 개방 및 자율화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 재보험의 자율화 및 개방 문제는 그 영향이 선사에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선박보험의 재보험시장 개방이 1996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선사에게는 특히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사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보험환경, 특히 재보험 자율화 및 재보험시장 개방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2. 보험시장 개방

2.1 보험시장 개방의 배경

2.1.1 미국등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미국의 개방압력이 있기 전부터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인 개방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제한적인 개방 조치였다. 이러한 제한적인 개방단계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계속적인 개방요구에 의하여 보다 전면적인 개방단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미국은 이때부터 생명보험시장까지 포함한 보험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 레이건대통령의 방한, 1984년, 1985년의 한미경제협의회를 거쳐 그 개방요구의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하였다. 1985년 9월 미대통령은 한국보험시장에 대한 미 통상법 제301조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미 통상법 제301조에 의한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우리는 본격적인 보험시장개방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2.1.2 우루과이 라운드(UR)

기존의 GATT체제를 보완하며, 농산물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 등을 포함한 국제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UR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보험시장은 이에 따른 개방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보험산업은 서비스분야의 금융서비스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생명보험, 비생명보험(손해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과 보험부수서비스 등 4개부문이다. 보험시장의 개방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서비스업종 양허표'에 기재되었고, 외국보험사의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분되었다. 기재방식은 보험영업의 4가지 국제간 교역방식, 즉 국경간 이동(cross border),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및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로 각각 기재하고, 분야별 양허표에 기재된 내용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후에 규제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최초의 UR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한 후

1992년 6월에 '보험시장자유화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 자유화계획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시장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1.3 우리나라의 OECD 가입추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체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에서 우리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0년대 초부터 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OECD가입을 위해서는 자유화규약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중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이 국내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중 보험 Section은 구체적으로는 4파트(Part)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파트는 무역관련보험, 생명보험 및 기타보험의 계약체결 및 이전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두번째 파트는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 관련된 거래 및 자금에 관한 내용이다. 세번째 파트는 외국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이며, 네번째 파트는 외국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과 본사와의 송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회원국에 거주하는 보험계약자(내국인)와 비거주 보험회사(외국사), 지점 및 대리점의 보험계약의 자유화, 거래에 따른 송금의 자유화 및 동등한 세제혜택 등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개방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한.미간 보험협상과 그 이후의 UR협상과정을 통하여 이미 상당수준 진보되어 있으나 기존의 시장개방수준이 회원국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분적으로는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보험시장 개방의 내용

2.2.1 적하보험 Cross-Border

Cross-Border는 자본이나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는 서비스의 국경간거래로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보험 사업자가 자국의 보험상품을 국내보험 당국의 허가나 인가없이 우편, Telex, Fax, Cable등의 수단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래의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1월 수출적하보험, 1995년 4월 수입적하보험 및 항공보험계약에 대하여 Cross-Border를 허용하였다.

2.2.2 손해보험 요율자유화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일정에 따라 1단계로 1994년 4월 선박보험, 기업성 특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에 대한 범위요율이 시행되었고, 2단계로는 1995년 4월 적하보험, 기업화재보험, 주택화재, 보증보험 및 가계성 특종보험에 대한 범위요율이 시행되었다. 1996년 4월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위험율 및 예정이자율에 대한 범위요율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더우기 범위요율 실시 2년후에는 요율의 완전자유화 예정으로 선박보험 등의 경우 1996년 4월, 적하보험 등의 경우 1997년 4월,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위험율 등의 경우 1998년 4월에 각각 자유요율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본격적으로 손해보험시장이 요율경쟁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2.3 모집제도 자유화

모집체제와 관련하여서는 1개 보험사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에서 1993년 4월에 2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을 허용한 바 있고, 1996년 4월에는 다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브로커제도의 허용은 1998년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2.2.4 재보험 자유화

정부는 1987년 3월 18일자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등 4개 종목의 국내 재보사 의무출재비율을 년차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 4월 1일부터는 의무출재제도를 완전폐지하였고 위험당 보유한도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1990년 4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이어 1992년 6월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의 발표로 국내 우선출재제도와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이 단계적으로 철폐됨으로 인하여 1998년 4월 이후에는 재보험산업의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행 손해보험 재보험 규제내용 중 국내사 우선출재제도는 국내시장에서 보험료의 보유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해외재보험출재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보험사들이 재보험출재시 국내사에 우선적으로 출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은 요율과당경쟁으로 인한 국내사간의 덤핑요율을 방지하고 불량재보험자와의 거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화재 및 특종, 선

박, 항공보험 등의 요율을 해외로부터 구독할 경우 대한재보사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이다.

재보험자유화의 추진방향은 보험종목별로 현재에도 상당부분 해외직접구독요율을 사용중인 해외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자유화 추진하고, 손해율이 높고 불안정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각사별로 “해외재보험자 선정기준(Security Guideline)”을 운영토록 유도하여 해외불량재보험자와의 거래을 억제토록 보완하는 것이다.

재보험자유화 추진일정은 1단계로 항공보험을 1993년 4월부터 자유화하였으며, 2단계로 1996년 4월부터 선박보험에 대하여 자유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손해율이 낮아 자유화시 영향이 큰 기타 전종목에 대해서는 3단계로 199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보험시장이 1998년부터 완전 개방될 경우 서구의 대형재보험사들이 국내시장에 상륙하여 재보사를 경유치 아니하고 재보험을 원보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재보험자유화 조치는 국내재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원보험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강제보험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요율구독에 관한 협정”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 계약유치를 위한 원보사간의 치열한 요율경쟁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요율의 경쟁적 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기업보험의 경우에 그간 재보험자에 의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던 계약조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재보험자유화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므로 원보사들은 계약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원보사의 입장에서는 보유정책의 수립과 재보험운영에 대한 자율성확보로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합리적인 경영과 나아가 책임경영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강제 재보험제도하에서 일정비율 이상 출재대상이 되었던 관리종목에 대한 원보사의 보유가 증대되고 또한 타종목에 대한 보유도 함께 증가되어 재보험 출재물량의 격감, 출재물량 감소에 따른 현금수지(Cash Flow)의 악화와 출재조건 경색화 및 재보험자에 대한 역선택 기회의 증가등은 재보험영업실적의 악화,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의 효율적인 보험시장 메카니즘의 붕괴에 따른 거중조정 연합 기구의 부재와 원보사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내보유능력을 증진시키지

못한 채 해외출재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보험료의 해외유출, 그리고 원보사간의 개별적인 해외재보험 거래로 유리한 재보험거래조건 확보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재보험시장 자유화에 대한 선사의 대응방안

3.1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변화에 대한 대응

재보험의 자유화는 원보사 및 재보사에게 생존 및 발전을 위한 변화를 요구할



박, 항공보험 등의 요율을 해외로부터 구독할 경우 대한재보사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이다.

재보험자유화의 추진방향은 보험종목별로 현재에도 상당부분 해외직접구독요율을 사용중인 해외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자유화 추진하고, 손해율이 높고 불안정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각사별로 “해외재보험자 선정 기준(Security Guideline)”을 운영토록 유도하여 해외불량재보험자와의 거래을 억제토록 보완하는 것이다.

재보험자유화 추진일정은 1단계로 항공보험을 1993년 4월부터 자유화하였으며, 2단계로 1996년 4월부터 선박보험에 대하여 자유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손해율이 낮아 자유화시 영향이 큰 기타 전종목에 대해서는 3단계로 199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보험시장이 1998년부터 완전 개방될 경우 서구의 대형재보험사들이 국내시장에 상륙하여 재보사를 경유치 아니하고 재보험을 원보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재보험자유화 조치는 국내재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원보험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강제보험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요율구독에 관한 협정”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 계약유치를 위한 원보사간의 치열한 요율경쟁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요율의 경쟁적 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기업보험의 경우에 그간 재보험자에 의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던 계약조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재보험자유화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므로 원보사들은 계약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원보사의 입장에서는 보유정책의 수립과 재보험운영에 대한 자율성확보로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합리적인 경영과 나아가 책임경영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강제 재보험제도하에서 일정비율 이상 출채대상이 되었던 관리종목에 대한 원보사의 보유가 증대되고 또한 타종목에 대한 보유도 함께 증가되어 재보험 출채물량의 격감, 출채물량 감소에 따른 현금수지(Cash Flow)의 악화와 출채조건의 정색화 및 재보험자에 대한 역선택 기회의 증가등은 재보험영업실적의 악화,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의 효율적인 보험시장 메카니즘의 붕괴에 따른 거중조정 역할 기구의 부재와 원보사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내보유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해외출재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보험료의 해외유출, 그리고 원보사간의 개별적인 해외재보험 거래로 유리한 재보험거래조건 확보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재보험시장 자유화에 대한 선사의 대응방안

3.1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변화에 대한 대응

재보험의 자유화는 원보사 및 재보사에게 생존 및 발전을 위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원보험사의 측면에서는 담보력의 증대, 언더라이팅 기법개발, 위험관리기법의 개선, 국내전업재보험자 활용을 통한 국내보유 증대, 해외진출의 점진적 확대, 재보험처리자세의 전환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재보험사의 측면에서는 재보험 신상품 개발, 새로운 재보험설비 구축, 국내재보험 전산망 도입 운영, 해외정보관리의 체계화 및 해외보험정보센터의 활성화, 국제적인 담보력 확대, 재보험 서비스 제공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요소는 위험관리기법의 강화 측면이다. 보험사는 개방화된 보험시장의 경쟁체제에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험물건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상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분쟁의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측의 담보사항(Warranty) 준수 여부, 보험사고의 원인 분석, 보험보상액의 산정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따라서 선사는 보험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Warranty사항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고의 파악을 정확하게하고 필요한 서류들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3.2 보험사 유인요소의 강화

지금까지는 원보험사가 인수한 선박보험은 원보험사와 대한재보험(주)간의 해상

선박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특약에 의하여 대한재보험(주)에서 원보험사의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재보험인수를 하였으므로 실사 실적이 불량하여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보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재보험시장이 개방된 환경하에서는 해상선박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특약이 폐지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적이 아주 불량하고 선대구조가 취약한 선사의 선박보험을 대한재보험에서 종래와 같이 인수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며 또한 리스크가 큰 선사의 기존의 선박보험요율을 갱신시에 상당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인수 여부 및 요율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선단의 이재율, 선단구조 및 선대규모이다.

재보험시장의 개방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선박안전관리는 선사의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재보험시장의 개방은 선박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또하나의 이유를 추가시키는 것이다.

선단의 구조개편과 선단규모의 확대는 선박보험부보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며 이에 따라 선단구조가 변화되면 선박보험의 부보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호를 받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단의 개선에 의한 보험료의 절감의 폭은 재보험시장의 개방이전에 비하여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기업의 선단개편 또는 확장계획에 고려요소로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3 재보험사 변경에 의한 보험료 절감

재보험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사우선출재조항 및 요율구득협정의 폐지가 예상되며 원보험자는 자신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대한재보가 아닌 해외의 재보험자에게 선박보험의 재보험을 출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사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재보험자의 선택에 다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한 요율은 선박보험요율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선사는 원보험자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부보가 가능한 재보험 출재를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가장 경쟁적인 요율 및 부보조건을 제시하는 원보험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요율이라는 단편적인 요소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선택가능한 대안, 해외시장의 상황, 장래에 예

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재보험사 변경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3.3.1 원보험사 입찰

원보험사들에게 각사의 재량으로 가장 양호한 재보험 요율을 구득하여 선사에 제시토록 하여 선사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원보험자를 간사사로 선정하여 선박보험을 부보하는 방안이다.

3.3.2 선사가 재보험자 접촉하여 구득한 요율을 원보험사가 적용토록 요구

선사에서 대한재보험을 포함하는 재보험자들을 접촉하여 요율을 구득하고 이 요율을 원보험사에 제시하여 선박보험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자신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출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의 당사자로서 요율 및 부보조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원보험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선사가 지명하는 재보험자를 원보험자가 동의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재보험의 출재는 원보험자의 소관사항이고 재보험자의 선택에 의한 책임도 원보험자에게 지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보험자들이 단합하여 이러한 부보 시스템을 모두가 거부할 경우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선사가 가진 재보험자에 대한 정보가 원보험자에 비하여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저렴한 요율을 제시하면서도 신용도가 높은 재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외의 우수한 브로커를 개입시킴에 의해서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사의 압력에 의하여 선택된 재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원보험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이다.

상기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선박운항비용을 절감하여 해운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사의 입장에서 이 방안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3 선사가 해외의 재보험사 또는 재재보험사를 접촉하여 구득한 요율을 대한 재보가 적용토록 요구

상기 '3.3.2' 항의 방안과 유사하나 국내의 유일한 전업재보험사인 대한재보를 지원하고 보험료의 해외유출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한 대한재보험과의 신뢰성을 유지하여 보험사고처리 등의 경우에 좀더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3.4 보험시장 분석 강화 및 브로커의 적극적 활용

지금까지는 원보험사에서 인수한 선박보험의 재보험은 모두 대한재보험으로 출재되었으므로 선사에서는 해외 보험시장의 동향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또한 재보험은 원보험사의 경영정책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어서 재보험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이를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재보험시장이 개방된 환경하에서는 선사에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의 분석이 필요하다.

해외보험시장의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정확한 정보원은 보험브로커이다. 국내의 대형 선사들은 P&I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이미 브로커를 통하여 부보를 하고 P&I 브로커로부터 보험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며 요율구득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기존의 P&I브로커들은 대부분이 선박보험 브로커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보험시장의 정보에 대해서도 방대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선박보험시장의 동향도 정기적으로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선사에서는 보험시장의 정보 및 분석이 필요할 경우 브로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재보험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선사의 보험시장 분석 목적에 잘 부합할 것이다.

4. 결 론

한국의 보험시장은 그동안의 정부의 규제 및 보호에서 벗어나서 점차 자유화 및 개방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보험시장의 개방은 미국등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 우루과이 라운드, 한국의 OECD가입 추진 등에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보험시장 개방의 내용은 적하보험의 Cross-Border 허용, 손해보험 요율 자유화, 모집제도 자유화, 재보험 자유화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선박보험의 피보험자인 선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은 재보험의 자유화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96년 4월 1일로 예정된 재보험시장 개방은 선사의 부보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험시장 개방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선사는 이러한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및 보험사들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보험시장 개방 특히 재보험시장의 개방에 처하여 선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보험자 및 재보험자의 변화상황을 주시하고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된 보험시장 환경하에서 보험자들에게 보험인수에 적극성을 가지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선박의 이재율 감소 및 선단 개편을 촉진하여야 한다.

셋째, 해외재보험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넷째, 평소에 해외보험시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브로커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선사는 치열한 국제경쟁하에서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박운항원가를 절감하고 보험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보험시장의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선사의 입장이다.

참 고 문 헌

- 1) 金基洪, UR協商妥結 以後의 損害保險 競爭力 提高方案, 損害保險, 1994.5
- 2) 金基洪, 우리나라의 OECD加入과 國內損保社 對應方案, 損害保險, 1995.2

- 3) 朴根華, 積荷保險 Cross-border許容에 따른 對應方案, 損害保險, 1995.6
- 4) 李海寬, 損害保險料率의 自律化와 그 對應策, 保險開發研究, 1991.3
- 5) 韓國保險學會, 保險辭典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1974)
- 6) 梁昇奎, 保險法 (서울 : 三知院, 1992)
- 7) 金政秀, 海上保險論 (서울 : 博英社, 1989)
- 8) 大韓再保險(株), 再保險市場-그 現況과 問題點-, 1989.10
- 9) 大韓損害保險協會, 損害保險史料-第5券, 1988.2
- 10) 趙海均, 保險市場의 特性에 關한 研究, 保險學會誌, 第31集, 1988.3
- 11) 大韓再保險(株), 大韓再保險 25年史, 1988
- 12) 金基辰, 再保險去來의 自律化와 앞으로의 課題, 損害保險, 1987.3
- 13) 崔明憲, 國內再保險市場의 環境變化에 따른 專業再保險社의 役割,
延世大學校 碩士位論文, 1994
- 14) 林宰永, 우리나라 再保險 自律化와 그 對應戰略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 15) 李成龍, 世界再保險市場의 現況 및 展望, 損害保險, 1995.5
- 16) 韓國自動車保險(株), 保險市場 開放 및 再保險自由化, 1995.6
- 17) 李基泰, 海上保險-理論과 實務- (서울 : 法文社, 1981)
- 18) 김형진, 再保險自律化에 따른 效率的 運營方案,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 19) 李錫宰, 保險市場開放化에 따른 對應戰略에 關한 研究
-우리나라 損保産業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 20) 保險開發院, 調查研究資料 No.24, 主要國의 海上保險料率, 1994.2
大韓再保險(株), 再保險市場, 1989.10
- 21) Bellerose, R. Philippe, Reinsurance for the Beginner, 2nd ed.
(London : Witherby & Co. Ltd., 1978)
- 22) Carter, R. L., Reinsurance (London : M&G Re., 1979)
- 23) Sedgwick Lloyd's Underwriting Agent Ltd., Bulletin, December 1994

